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

016-729-5363

일시 : 2003년 6월 24일 10시 ~ 1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시는 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6월 24일(화)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년 동안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 및 사망사고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군의문사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 기관들과 시민단체와의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시고,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고견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 일시 : 6월 24일 10시 ~ 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순서

인사말 : 김용수 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최병모 회장(민변)
사 회 : 이계수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발 제1 : "군의문사 현황과 개선방안" 10: 10 ~ 10: 30
(이철학 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발 제2 :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의의" 10: 30 ~ 10: 50
(황학수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론 11: 00 ~ 12: 00

1. 군의문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방부 특조단장) 노재홍
2. 군사법제도 및 수사과정 개선방안 (민변, 이행규 변호사)
3.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검토 (민변, 정지석 변호사)
4.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검토 (김원웅 의원<설외중>)

[토론자는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휴식시간 12: 00 ~ 12: 10

전체토론 12: 10 ~ 13: 00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 일 시 : 6월 24일 10시 ~ 1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순서

인사말 : 김용수 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최병모 회장(민변)

사 회 : 이계수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발제1 : “군의문사 현황과 개선방안”

(이철학 신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제2 :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의의”

(황학수 변호사 : 천주교인권위원회)

지정토론

1. 군의문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1:00-11:15

(국방부 특조단장 노재홍 대령)

2. 군사법제도 개선과 군사망사고 수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11:15-11:30

(민변, 이행규 변호사)

3.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검토 11:30-11:45

(민변, 정지석 변호사)

4.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검토 11:45-12:00

(개혁국민정당 대표 김원웅 의원)

휴식시간 12:00-12:15

전체토론 12:15-13:00

호통로부동 헌우 을밀동 사망사고

조사 - 시아 1월 20일 14:00
수사결과 출판 예상일자 : 2013년 2월 20일

제작

(별도)증언 모병초 (전쟁체험인묘주관)증언자 수용준 : 일시인
(전체별 모호체험을)수요 수면이 : 일자

"민생체험 모병초 사망사고" : 1999년
(증언자 전쟁체험모사망사고 증언인묘주관 : 부산 협동기자)
"의원 의생체험 모병초 모병초 사망사고" : 2000년
(전쟁체험인묘주관 : 대구경 수경신)

총조사자

01-11-00:11 대구경 협동기자 모병초 사망사고

(증언 총조사자 부별로)

08:11-11-11 대구경 협동기자 모병초 사망사고 모병초 코리엔타운
(대구경 유동기자 별도)

08:11-08:11 대구경 협동기자 모병초 사망사고
(대구경 조경기자 별도)

00:11-00:11 대구경 협동기자 모병초 사망사고
(대구경 윤현경 표기자 별도)

00:11-00:11 대구경 협동기자

00:11-00:11 대구경 협동기자

군의문사 현황과 개선방안

이철학 (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여는 말

군대내 사망사고나 자살 처리자 가족들이 사건 진상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의문을 갖는 이유는 군 수사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군 수사당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국방부에 탄원하였고 이로 인해 발족한 것이 이른바 특조단이다.

1999년 7월에 '민원제기 사망사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발족하였음에도 제 사건을 진정 접수한 유가족들 중에서 재조사 도중에 재조사를 거부하고 '특조단' 해체를 요구한 것은 어떠한 까닭일까?

이는 분명하게 '특조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의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재조사와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군의문사를 정의 내리고, 군대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을 살펴본 후, 그간의 군의문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군의문사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군의문사 정의(2002 국가인권위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부분인용)

사망의 원인은 크게 자연사와 사고사로 나눌 수 있다. 사고사는 우연한 사고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죽이는 자살, 그리고 타인에 의하여 생명을 잃는 타살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사라는 또 다른 범주가 존재한다.

군의문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①자살로 보기에는 많은 의

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 ②강력한 타살의 근거가 제시되었는데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조작하는 경우, ③비과학적이고 허술한 수사과정, 보안규정 남용 등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경우, ④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부내 내 요인을 배제한 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납득할만한 동기 및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군의문사란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고사 및 자살사고와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유가족이 납득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군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

가. 군내 사망사고 현황

1980년부터 1995년 말까지 15년 5개월간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951명이다. 이중 자살처리가 3263명(36.4%), 폭행치사 387명(4.3%)으로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시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5년마다 1개 연대병력에 해당하는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셈이다(한겨레신문 1995년 9월26일자 참조).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총사망자 대비 자살처리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아래 표 참조)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7월	누계
사망자수(명)	359	273	248	230	182	161	85	1,538
자살처리(명)	103	92	102	101	82	66	44	590
자살처리율(%)	28.7%	33.7%	41.1%	43.9%	45.1%	41.0%	51.8%	38.4%

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접수 의문사 현황 (2003년 4월 24일 현재)

1) 진정 사건 유형별 통계

구분	자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2건	3건	6건	7건	1건	89건
경	8건	1건	1건	2건	1건	13건

* 기타(통계에 넣지 않은 진정 사건) : 공익근무요원 투신자살 1건, 동원예비군 변사 1건.

2) 접수 사건 유형별 통계

구분	자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9건	7건	8건	10건	3건	107건
경	9건	1건	1건	2건	1건	14건

3) 진정 사건 사고 발생 시기별 통계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군	1건	3건	11건	31건	43건	89건
경	0건	0건	0건	4건	9건	13건

4) 진정 사건 최근 5년간 통계(발생년도 기준)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대	2002년대	계
군	11건	10건	8건	13건	19건	61건
경	2건	2건	0건	2건	5건	11건

5) 진정 사건 자살처리 유형

- 총기자살 : 35건(44%)
- 의사 : 19건(24%)
- 추락사 : 14건(17%)
- 기타(수류탄자폭, 동맥절단, 익사, 질식사, 가스중독) : 12건(15%)

3. 군의문사 개관(2002 국가인권위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발췌)

군의문사 사건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80년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의한 군의문사 사건을 제외하면 1998년 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부터이다. '국회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언론을 통해 사망사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고이 묻어두었던 의혹을 국방부 민원조사과를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훈 중위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1998년 12월9일 군검찰, 합

조단,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과 민간검찰 수사요원 등 68명으로 '국방부 특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를 하였고 99년 4월 'JSA 김훈 중위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 합동조사단'은 최초에 자살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은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훈 중위 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형평성을 제기하고 모든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요구가 수렴되어 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를 신설하고 각 군은 참모총장 책임 하에 재조사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및 운용을 골자로 하는 '80년 이후 군의문사 관련 민원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보고서) 그러다가 '99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 민원을 접수받아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99년 7월에는 재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조직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각 군에 대한 지도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법무관리관실 예하의 의문사처리과를 별도의 독립기구인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으로 개편하였다.

'민원제기 사망사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재조사 기본원칙과 절차에 대해 ① 유가족의 고충이해와 국방개혁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② 사건별 전담 조사반 편성으로 조사 실명제 실시 ③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가족 요구 수용 ④ 유가족(대리인),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 자문위원 등의 수사기록 열람 및 현장접근 보장 ⑤ 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각종자료 재조사에 적극 반영, 검증 ⑥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군 이외의 전문기관 활용 ⑦ 유가족(대리인)이 요구 시 자문위원, 언론인 등 참가 하에 조사 설명회 또는 공개토론회 실시 등을 밝힌 바 있다.(민원제기 사망사고 3차 조사결과, 국방부 특별조사단 2000.12.21)

그러나 사건별 재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수사기록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수사결합 등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존 수사기록에서의 해석상의 차이로 순직처리를 하여 유가족의 불만을 달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실제 사건을 진정 접수한 유가족들 중에서 재조사 도중에 재조사를 거부하고 특조단 해체를 요구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조단의 활동성과로 ①유가족 민원 및 군의문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②재조사결과 상당수 사건의 순직처리 및 명예회복 ③사망사고 예방활동 활성화로 군내 사망사고 감소 ④군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을 들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의 재조사는 조사단이 군 관계자들로만 구성돼 있고 전역한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유족들의 의문을 풀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 철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특조단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을 뿐 수사에 있어서 구인권이나 강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설사 수사에서 어떤 의혹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주된 평가다. 유가족들은 특조단의 재조사는 기존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번 인정해 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군의문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4. 군의문사 발생원인

가.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수사권한은 전적으로 군이 가진다. 수사의 대상인 군이 스스로 수사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타당한 논리지만, 군 조직이 갖는 폐쇄성과 폭력성, 명예를 앞세우는 군 특유의 보신주의,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검찰권,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성을 반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수사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

였던 것처럼 군의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포천 농협 강도 사건이나 구리 임모 하사 총기·탄약 반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더라도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자정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유가족들이 군 수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주요 요인이다.

나. 천편일률적인 자살동기

자살로 발표된 군의문사 사건들 대부분이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며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군은 이 사건들에 대해 타살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살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군이 꼽은 자살의 원인들은 주로 내성적인 성격, 군복무 부적응, 불우한 가정환경, 여자친구의 변심 등이다. 수사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들을 뒷받침하는 부대 내 주변 인물들의 진술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사기록이 그리는 사망자의 모습이 대부분 유가족이나 친지들이 알고 있는 생전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심한 경우 허위사실이 버젓이 가공되어 수사기록에 올라 있기도 하다. 게다가 군이 말하는 자살의 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망자가 못나고 나약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군은 죽음에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수사기록에 부대관리나 사병관리의 문제, 구타나 가혹행위, 따돌림 등이 죽음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이 수사결과를 믿지 않고, 수사의 목적이 진상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 군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 현장 훼손
현장보존은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수사자료 및 증거를 보존하여 과학적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현장을 가능한 한 발견 당시의 모습으로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군의문사 사건들의 경우 이러한 상식은 통

용되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은 기본이고, 물청소, 사체 이동, 피복 세탁, 증거물 소각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됐다. 또 현병대 수사관들은 감식작업에 태만하거나 무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가족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바야흐로 감식작업과 과학수사의 궁극을 보여주는 <본콜렉터>같은 영화나 <CSI과학수사대>같은 드라마가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판국에 유가족들의 눈에 보여지는 군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은 명백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현장이 훼손되고 감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 리는 만무하다. 이런 가운데 현병대 수사관들이 오로지 집중하는 진술서 작성을 통한 수사방법은 그 결과 나오는 진술들의 천편일률성 만큼이나 유가족들의 의혹을 강한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

라. 부검절차의 한계

사인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부검은 자·타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군의문사에 있어서 부검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검의 소견이 사실상 수사결론이 된다는 점에 있다. 자·타살 여부는 부검의 소견만이 아니라 사망자의 건강, 주변관계 등 인적사항은 물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결과를 종합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문사의 경우 여러 가지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어야 할 부검결과가 수사관들의 무능과 한계를 보완하는 전가의 보도로 이용되며 수사결론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군과 법의학자들의 부적절한 유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의학자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절대 군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이다. 또 현행 부검절차는 직접적인 사인 못지않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중요시되는 군의문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는지, 업무상 발병은 없었는지 면밀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전신 엑스레이 촬영은 필수인데, 총상인 경우에도 탄도 관측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마. 보안규정의 남용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은 군사시설보호법상 해당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에 의해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를 금지 당하고 있다. 그러나 TV화면에 예사로 비춰지는 화장실·취사장·식당·내무반·휴게실 등에서까지 촬영이나 묘사를 막고 기밀과 무관한 사건관련 진술에 대한 녹취를 막으며, 사건의 이해를 위해 확인이 필수적인 기본문서자료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하는 현병대의 모습에서 유가족들은 군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 면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종결 후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접근의 불편함 여부를 떠나 과연 모든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공개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회의적이다. 일단 군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지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증명을 해야 하는 현 구조 속에서 사건자료 일체를 사실상 군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5.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가. 특별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담조사국 설치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는 현 구조 속에서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고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의문사 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로 하여금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하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 전담조사국을 설치하고 전문조사요원을 충원하며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 향후 군내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발상의 전환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이들은 비전투손실로 취급되며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약화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징병제도를 통해 엄격히 선발된 사람이며, 직무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업무수행 외에는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군 생활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귀찮은 존재, 시비를 거는 존재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 및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자살을 하고 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자식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않아서 자살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외치며 사체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유골을 임시 안치할 수 있는 합동봉안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묘역 조성과 유가족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 군 수사방식의 개선

초동수사 강화가 필수다. 1) 사망사고의 경우 현장 보존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수사관 및 일반 장병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진술에 의존하는 현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면밀한 감식 작업과 정밀 부검 등 과학적인 수사를 지향해야 한다. 현병대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 및 장비 확충은 필수다. 3) 군의문사의 특수성을 고려 수사과정 및 부검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를 파헤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보안규정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 각종 정보에 대한 유가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자-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의 조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6) 의혹

이 제기되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 요청 시 모든 기록은 수사결과 발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제도 개선

장기적으로는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의문사 양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군사법원법상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군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할권의 민간 이양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하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령 사망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군 검찰과 일반검찰이 합동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변사보고 즉시 일반 검찰과 함께 검시 및 현장 감식 등 초동수사에서부터 일반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도록 하면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유가족에게 전가되어 있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자살이 아님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면 제도적 강자인 군과 국가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맺음말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군은 민간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었으며, 여타의 군 문제들은 외부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처리되어 왔다. 한편 작금의 시대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와는 달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의 목소리가 드높아진 상태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이미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군 또한 이에 대하여 예외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군의 특성상 위계관계와 보안절차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를 남용 혹은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외부와의 관계없이 폐쇄된 성역으로 남아 고이는 물은 썩게 마련이다. 이제 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신과 개방의 탄력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 게다가 군의문사 문제는 군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지닌 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오늘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와 문화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이 은폐 혹은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제도 또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은 어찌하여 군의문사 문제에 대한 온전한 진실 규명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의 결여보다는 제도와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과거 군사 정권의 잔영이 아직 군대 내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대하여 사려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합당한 조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은 썻을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길이며 인간의 모습을 한 민주화와 제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다.

군과 국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기구의 설치,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하는 전담권의 이양 및 전담 조사국의 설치,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의 발상의 전환, 군수사방식의 개선, 제도의 개선 등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군의문사는 분명히 존재했고, 존재해 왔다. 의문을 일으키는 모든 죽음에 관하여 책임성 있는 조사와 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만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배가시키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당국과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황학수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1. 머리말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만20세가 된 남자라면 신체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1, 2급의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개 대학재학이상의 고학력자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고 간 군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구타나 가혹행위 등 폭력이 만연해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대내의 사망사고의 발생은 국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민개병제하에서 국가는 입대시부터 제대시까지 장병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군대내에서의 사망사건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김훈중위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망경위나 동기등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채 군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자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군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는 유가족들의 불만과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의 의혹들을 가지는 동기가 되었다.

인간의 생명이란 가장 존귀한 것으로 죽음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즉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보장과

밀접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고사 및 자살사고와 군수사기관에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유가족이 납득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인 군의문사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아울러 민주 국가의 보전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군의문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 가정의 파괴는 물론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한 병역거부운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군의문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해결할 방안들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2.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방안

가.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군의문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군대내의 사망(영외에서의 사망을 포함한 개념)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고 하겠다.

군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으로

첫째, 군검찰이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휘권과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군대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지휘관은 자신의 지휘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진실규명보다는 사건의 은폐 내지 축소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군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명무실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인력들의 자질부족을 들 수 있다.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는 초동단계의 수사가 아주 중요함에도 실제로 군대내에서의 사망사고의 경우 상당수가 현장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장이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예단하고 수사를 하며, 사망의 동기에 대한 수사도 거의 대부분 성격, 가정환경, 여자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결론을 내려 다른 동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방안

1) 근본적인 해결책

(1) 군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군수사의 신뢰성 확보

군수사기관의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검찰의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이 보장된 군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군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군의문사 문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군사망사고처리위원회(가칭)

군대내의 사망사고 조사에 군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유족대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여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군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1차적으로 군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이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2차적으로 이 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국가인권위를 통한 해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담조사국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동단계에서부터의 참여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때문에 결국 2차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발생한 의문사에 대한 해결책(특별법의 필요성)

현재 유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한다)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의 재조사는 조사단이 군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 특조단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을 뿐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이유로 해서 재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해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기존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있다.

2.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I)

이미 발생한 의문사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유족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다는 점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함께 있어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제안

가. 특별법의 의의
오랜 세월동안 군내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 설득력 없는 수사결과 등으로 불신을 자초하여 군수사기관은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군은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망자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을 돌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들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의문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당연하며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하여 의문의 죽음에 대한 그 진상이 규명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회복 및 국가의 온전한 존립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 특별법의 핵심내용에 대한 제언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군의문사 문제를 풀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1999년 의문사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험이 있고,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위 법이 군의문사 특별법을 제정함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의 설치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직속 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 및 수사권한의 부여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나 수사권한이 제한된다면 그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사 및 수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대인조사권한, 이와 관련한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 감정인의 지정 및 의뢰, 관계자료와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무국 설치 및 조사인력의 확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사 내지 수사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들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충분한 조사기간

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2년 이상의 조사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각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위 기간 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 정보제공자의 보호

군의문사의 경우 군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일어나는 점 때문에 현장조사나 기록을 통하여 진상이 규명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증인들의 양심선언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의 진상의 파악은 요원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6) 인적, 시적 범위

특별법에 의한 조사의 인적범위의 문제는 현역 군인들의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모든 사람들의 사망사고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일어난 모든 군의문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 조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는 소추가능성에 해당하는 문제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따라서 조사와 관련한 사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8) 조사결과에 대한 구제절차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고, 만약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망이 국가가 책임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망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 징병제 하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맷음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당한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는 그 진상의 규명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눈으로 바라만 보았을 뿐이었다. 우리는 졸지에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해아리고 위로하는 공동체의 일원의 역할을 하는데 다소 소홀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다소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

군의문사의 문제의 해결은 한 개인의 죽음의 실체를 밝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군대내에서의 폭력,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 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 민주군대로, 대한민국을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군내 사망사고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

이행규 (변호사, 민변)

1. 군내 사망사고의 조사과정 개괄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체로 사건발생부대의 사건조사절차, 각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사망구분절차, 각 군의 영현절차, 국가보훈처의 보훈수혜결정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군인의 사망사고 또는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민간파마찬가지로 군검찰관이 '검시'를 실시한다. 검시를 거쳐 사인이 명백하고 그 사인에 대하여 유족이 수긍하는 경우에는 사인규명, 유족인도의 절차로 사망사고 조사가 종결되게 되나, 사인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인에 대하여 유족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 동의 하에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게 된다.

그런데 군인의 사망사고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의 단서가 됨과 동시에 부대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전투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취급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전투력 관리의 측면에서 국방부전사상자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은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전문 보고한 후 7일 내에 사망확인조서에 사망진단(시체 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 규정에 따라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수사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24시간 이내) 사망 원인을 비롯한 결론을 1차적으로 도출하여야 하고, 적어도 7일 이내에는 소속부대장으로 하여금 소속 군 참모총장에 대한 서면보고가 가능하도록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망확인조서에는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 보훈수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기치는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을 기재하도록 하

고 있다.

2. 조사과정의 문제점

가. 조사의 공정성 문제

군대에서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요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당해 지휘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현병이 1차적으로 초동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대장에게 지휘보고 한다. 이러한 지휘보고시 사실상 당해 사건의 처리방향 및 관련자의 처벌수위(구속 여부를 비롯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휘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관 자체가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민간 검찰에 상응하는 군검찰 또한 소속 지휘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책임있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왜곡된 군사법체계로 인한 구조적인 불공정에 비추어 볼 때 유족들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해당부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발제자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

나. 조사능력의 문제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병대에서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군대의 현병은 군 사법경찰관리로서 민간의 경찰과 대응되는 수사기관이다. 현병인력은 장교의 경우 대체로 사관학교 또는 학사장교 출신 인력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부사관(준사관 포함)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사관 과정을 마친 인력으로 구성되고, 의무복무를 위해 정집된 병사들 중 차출되어 소정의 별도 교육을 받은 병사들이 피의자 호송, 영창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병의 인적구성, 인력충원 절차 및 보수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사고를 조사·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혈흔·머리카락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 등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편 군내 사망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사와 총기사의 경우 자·타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나,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부검을 담당하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가 민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다. 조사시간의 문제

위와 같은 조사능력과 전문기관의 부재와 함께 군내 사망사고의 조사에 있어 심각한 것은 조사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24시간 이내에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을 (잠정적으로나마) 결론지은 보고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현병으로서는 12~18시간 동안에 일응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내려진 '잠정적' 결론이 결국 7일 내의 서면보고상의 결론 또는 최종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관의 검시 또는 부검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병의 사망확인조서 내용이 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혜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내용이 충분한 조사와 심사숙고 끝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와 같은 촉박한 조사기간은 큰 문제이다.

라. 군의 폐쇄성으로 인한 진실발견의 의지 부재 문제

특수부대 301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기관 또는 해당 부대에 사인, 특히 사망동기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자살의 경우 자살동기를 파헤치다 보면 부대내의 경직되고 강압적인 분위기, 관행적인 폭행, 억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책을 당할 가능

성이 있는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서는 사망의 원인 또는 책임을 당사자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나 부대원들이, 조직과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자살의 동기를 정확히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 수사기관은 "애정문제 비판, 가정문제 비판, 군복무 염증"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사망동기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가. 군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군내 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비롯된 군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군의문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군의문사에 대한 재조사가 십수년을 거쳐 수 차례 기구를 바꾸어 가면서 이루어졌음에도 그 유족들이 여전히 그 수사나 조사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또 다시 군에서 재조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독립적인 조사권을 가진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간에서의 특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충격요법에 의해서만이 군내 사망사고 조사와 관련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 있다.

나. 군사법제도의 개혁

군사법제도의 개혁이 현재의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장래의 군의문사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병을 비롯한 군검찰과 같은 군내 수사기관이 모두 지휘권에 복속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소신있는 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군사법제도의 구조가 유족들의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특히 군검

찰을 지휘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되어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병에 대한 견제 및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군검찰 스스로 내부적인 정화노력과 군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군내 상시적인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군의문사해결을 위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이고, 과거에 발생한 군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장래에 현재의 군의문사 문제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어서 안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내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의문사 문제의 핵심은 조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이므로 현재 해당 부대장(사단장, 함대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제도적으로 이양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국방부 직할 내지 각군 본부 직할의 군내 사망사고 조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여 사망사고 발생부대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하고 관계자에 대한 처분권한도 차상급부대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당부대 군검찰 및 현병은 현장보존 정도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특조단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편제의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군내 사망사고 조사위원회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 군내사망사고 조사국 요원들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조직구성과 실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조사위원회 조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및 조사능력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라. 군내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담당관제도의 도입으로 향토인권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군의문사 및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군의 폐쇄성이나 경직성으로 인한 군의 인권의식 부재 및 병사들의 인권 유린으로 야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따라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군내에서 이러한 교육 및 소원수리 등을 담당할 인권담당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정지석(민변,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0년부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98. 9. 1. 추모연대의 요청으로 민변에서 완성하여 발표한 최초의 의문사법안에는 의문사를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한 바 있으나, 제정법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만 한정되어 군의문사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사람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매년 3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중 100여명이 자살이라고 발표되는 군부대내 사망사건 중 상당수의 가족들이 군특조단의 조사를 믿지 못하고 의문사임을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히 의문사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성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생전의 행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의문사법의 개정인가, 군의문사특별법의 제정인가

그런데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함께 있어서 이와 같이 기존의 의문사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별도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독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그동안 추모연대 등 민간단체에서는 의문사법의 적용대상을 군의문

사를 포함한 일반 의문사에까지 확대시키는 범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의문사법 제4차 개정안에서는 의문사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의문사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문사는 현재에도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문사에 비해서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의문사위원회 방식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실제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의문사에는 군대 관련 의문사가 상당수 있어 이를 조사하면서 축적된 성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2. 법안에 대한 검토

가. 목적 (제1조)

법안 제1조는 특별법의 목적으로서 군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법의 목적규정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활동의 전체 방향을 규정하는 역할도 한다고 본다. 특히 군의문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상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법의 목적으로서 재발방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것이다.

나.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 9인 중 상근위원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을 두고 있는 것은 현행의 의문사위원회와 거의 동일하며, 기타 자격요건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의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은 민간 출신의 변호사, 1명은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 출신의 상임위원은 공무원 조직과의 협력채널을 만들어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서 오히려 조사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리고 제2기 위원회 구성에서는 민간단체가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등 현재 위원 임명을 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군의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상임위원 구성에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다. 사무국 (제12조)

사무국의 직원, 즉 조사관의 신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의문사법에는 직원의 신분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예산상의 필요 등의 평계를 대면서 조사관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였는바, 이는 과연 조사관들과의 일체감 형성에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과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사무국장 및 조사관의 신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중에 후속작업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때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진정기간 (제15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진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짧으며, 게다가 위원회의 활동중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의문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이다. 물론 위원회는 현재까지 발생한 의문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적어도 수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 활동 기간에 발생하는 의문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진정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든가, 아니면 적어도 법 시행 후 위원회의 활동 개시일부터 3년 정도의 기간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 조사기간 (제20조)

법안은 진정사건에 대해서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5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개별 사건의 조사기간에 관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즉 현행 의문사법은 진정에 대해서 즉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활동 개시 직후

각하사건을 제외한 모든 진정사건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조사기간이 진행되었고, 결국 이러한 조사기간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규정으로 변하고 말았다. 따라서 진정을 접수하여 각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조사개시 결정으로 하지 않고, 개별 사건마다 실제로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조사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명예회복 및 보상 (제23조)

법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의 종류와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 재정신청 (제25조)

재정신청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는 특별관할 규정이 필요하다. 의문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김준배 사건의 경찰관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고, 이어서 제기한 재청신청에 대해서도 광주고등법원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전담부서를 대검찰청 등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특별관할 규정이 필요하다.

3.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

발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왕에 발생한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도로 군사법제도 개혁, 군사망사고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군의문사 발생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물론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군사문화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군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의제에 포함시켜 그 일환으로써 함께 논의되고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맷음말 - 과거사청산 노력과의 연대 필요성

지금 우리나라에는 해방 이후 한번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삼청교육대, 군의문사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내지 조사요구가 빗발처럼 쏟아지고 있고, 지난 김대중 정권 들어서서 제주4·3사건이나 거창사건, 의문사위원회 등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도 사망사고의 발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인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이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의 아픔을 청산하는 노력의 하나인 만큼 다른 과거사 청산작업과의 연대 속에서 추진할 때 더욱 힘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